

청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가단594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나5749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가단59482 판결

전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A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0. 2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접수 제8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C와 사이에 2018. 3. 12. (주)C의 (주)D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9. 3. 12.(이후 2021. 3. 12.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주)E와 사이에 2019. 3. 12. (주)E의 (주)D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9. 3. 12.(이후 2021. 3. 12.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주)C와 (주)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D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주)D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주)C와 (주)E의 대표인 B은 위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C와 (주)E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D으로부터 2019. 3. 12. 각 8,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주)E는 2021. 1. 15., (주)C는 2021. 2. 13. 각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주)D에 2021. 5. 24. (주)E의 채무원리금 87,264,766원을, 2021. 6. 1. (주)C의 채무원리금 86,521,38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2021. 1. 9. 전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접수

제85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18. 3. 12.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B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 1. 15. 및 2021. 2. 13. 위 각 회사가 대출계약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5. 24. 및 2021. 6. 1. 위 각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상당구 F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부동산을 판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피고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0. 11. 9.부터 4차례로 나누어 B에게 송금되었는바, 과연 그 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한 점, ③ B은 2018.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데, 피고 역시 B과의 딸과 함께 2018.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2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